고소장

고소인

성명: 기태

주민등록번호: ㅁㄴㅇㄹ

주소: ㅁㄴㅇㄹ 전화번호: ㅁㄴㅇㄹ

피고소인

성명(닉네임): ㅁㄴㅇㄹ 전화번호: ㅁㄴㅇㄹ

고소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고소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사실

피고소인은 ㅁㄴㅇㄹ 중고거래 사이트인 ㅁㄴㅇㄹ에서, ㅁㄴㅇㄹ(이하 '본 중고거래 대상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고소인에게 정상적인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판매하겠다고 아래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피고소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물건이 없거나 아예 물건이 없어서 돈을 받더라도 정상 적인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고소이유

- 1. 상기 본인은 피고소인과 ㅁㄴㅇㄹ에 ㅁㄴㅇㄹ 사이트의 판매글을 보고 알게 되어 사이트 내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 2. 피고소인은 중고물로서 정상적으로 작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없거나 아예 물건이 없어서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계시글을 올리고 고소인에게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3. 고소인은 본 중고거래 대상물을 피고소인으로부터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소인의 계좌 (-)로 현금 ㅁㄴㅇㄹ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소인으로부터 정상적인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 4. 피고소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본 중고거래 대상물의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금 ㅁㄴㅇㄹ 받아 위 피해금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 4. 따라서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고소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므로, 피고소인을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증거자료 1. 위 사건 판매 게시글 캡쳐본 등

0 L 0 2

위 고소인 기태 (서명 또는 인)

ㅁㄴㅇㄹ귀중